

제 49 호

1974. 6. 10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김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시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 856 호 : 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 3

◎ 규 칙

제 1375 호 : 서울특별시외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 3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조 **례**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
1974년 6월 10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856호

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
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에 「낙성대입장료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종	구	금	비
별	분	액	고
낙성대입장료	어린이 1회에 대하여	10 원	
	어른 1회에 대하여	30 원	

이 조례는 197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규 **칙**

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
1974년 6월 10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875호

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의 구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1호중 「다」를 다음과 같이 천정한다.

다. 구관장 사회복지관계사업소와 노인정 및 실버식당의 관한 사항
제12조중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「건축제1계장」말의 「건축제장」을, 동조 제3항중 「3. 건축제1계」 및 「4. 건축제2계」 다음에 「(중로구·중구를 제외한다)」를 각각 삽입하며, 동조 동항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

고 동항 제 3호사육장 (종로구 중구·용산구제외)를 삭제한다.

①종로구·중구의 건축과에는 주택지·단속지·건축제를 두고 마포구·용산구를 제외한 기타 구에는 건축제 1제와 건축제 2제를 둔다.

2의 2. 건축지(종로구·중구에 한한다)

가. 구역별 건축허가 확공검사 및 준공검사

나. 구역별 준공검사의 준공까지의 공사감독

다. 구역별 건축허가조건을 위반한 위법건축에 대한 허가취소 및 고발

라. 건축사 및 건축업자 지도감독

마. 위험건물에 관한 사항

바. 구역별 위험건물에 관한 사항
사. 축대의 안전도검사 및 위험축대에 관한 사항

아. 영선에 관한 사항

자. 시영주택(아파트)건축 및 보수공사

제 12조의 2중 제 1항을 다음과

같이 하고 동조 제 2항을 제 3항

으로 하며, 제 2항 및 제 3항제 4조

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마포구·용산구 주택과에는 주택지·주택관리지·단속지·건축제를 두고 종로구·중구를 제외한 기타 구에는 주택지·주택관리지·단속제를 둔다.

②주택제장·주택관리제장·단속제장은 지방행정주사로, 건축제장은 지방건축기사로 보한다. 다만 주택제장은 지방건축기사로 보할 수 있다.

4. 건축지(마포구·용산구에 한한다)

가. 구역별 건축허가 확공검사 및 준공검사

나. 구역별 건축공사의 준공까지의 공사감독

다. 구역별 건축허가조건을 위반한 위법건축에 대한 허가취소 및 고발

라. 건축사 및 건축업자 지도감독

마. 위험건물에 관한 사항

바. 구역별 위험건물에 관한 사항
사. 축대의 안전도검사 및 위험축대에 관한 사항

아. 영선에 관한 사항

자. 시영주택(아파트)건축 및 보수공사

부 칙

이 규칙은 1974년 5월 18일부터 적용한다.